

<p>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2조(출석수당 등)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·안건검토수당과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 세조례중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 시세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 또는 징수 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주행세와 담배소비세 2.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중 전당 오백만원 (가산금 제외) 이상의 금액을 체납(과년도분에 한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한 자의 당해 자치구에 체납된 시세. 다만, 구세에 부과 또는 병기하여 고지되는 시세와 부과한 회계년도 폐쇄일 현재 소송계류 중이거나 회사정리절차에 의하여 정리채권으로 확정된 시세는 제외한다. <p>④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체납된 시세에 대하여 구청장이 행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①(시행일) 이 조례는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②(위임사무 변경에 따른 적용례)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체납된 시세부터 적용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운용·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1항제1호 중 “영 제20조제2항제1호”를 “영 제20조의2제2항제1호”로 하고, 동조동항제2호 중 “영 제20조제2항제2호”를 “영 제20조의2</p>	<p>제2항제2호”로 하며, 동조동항제4호 중 “인명구조”를 “인명구조, 부상자치료”로 하고, 동조동항제6호 중 “영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”를 “영 제20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”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 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</p> <p>서울특별시 세감면조례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 안 제12조의2중 “주택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 받아”를 “주택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불가피하게 채권액 이하의 주택으로 대물변제 받아”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 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 세감면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2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4. 2001년 5월 23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 취득(건설업체의 부도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2004년 12월 31일 이후에 취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004년 12월 31일에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)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.</p> <p>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제12조의2(하도급업자에 대한 감면)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(이하 이 조에서 “하도급업자”라 한다)가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불가피하게 채권액 이하의 주택으로 대물변제받아 하도급업자의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. 다만, 그 이전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주택을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
---	---

<p>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②(적용례) 제12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</p> <p>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</p> <p>안 제39조제5항제6호 및 동조동항 제7호중 “연접한”을 각각 “인접한”으로 한다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22조제3항에 제8호 내지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8.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게 당해 사업목적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</p> <p>9. 영 제95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</p> <p>제23조제4항제1호중 “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3호”를 “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”로 한다.</p> <p>제39조제5항에 제5호 내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5. 서울특별시의 지분이 제1호에 규모에 해당되는 일단의 공유토지를 공유자에게 매각하는 때</p> <p>6.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동일한 가구 또는 회지내의 시유지를 당해 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고자 하는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</p> <p>7.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 필지의 토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하는 때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</p>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px; margin-bottom: 5px;"> <tr><td style="padding: 2px;">의안 번호</td><td style="padding: 2px;">912</td></tr> </table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01년 9월 일 재정경제위원회</p> <p>1. 심사경과</p> <p>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1년 6월 23일, 서울특별시장 제출 나. 회부일자 : 2001년 8월 22일 회부 다. 상정일자 : 제1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(2001년 9월 4일 상정, 의결)</p> <p>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 : 기획예산실장 김우석)</p> <p>가. 제안이유 각종 재해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소방 정원을 보강하려는 것임.</p> <p>나. 주요골자</p> <p>가) 총 정원 감축 : 106명(안 제2조본문) -(현행) 15,340명 → (개정) 15,446명 나) 소방공무원 정원 증원 : 106명(안 제2조제2호) -(현행) 4,874명 → (개정) 4,980명</p> <p>다. 참고사항 가) 관계법령 :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제21조(정원의 규정)</p> <p>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■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</p> <p>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김남중)</p> <p>【총괄부문】</p> <p>○ 소방공무원 5개년 증원계획에 의해 행정자치부가 2001년 6월 15일자로 서울시에 106명의 소방직 공무원의 2001년도 증원을 승인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.</p> <p>【세부사항】</p> <p>○ 지난 127회 임시회에서 동 조례를 개정할 당시 서울종합방재센터 설치 및 보강계획에 의해서 서울시가 2001년 4월 24일자로 행정자치부에 소방현장 보강인력 106명 증원요청이 있었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임.</p> <p>○ 지난 조례 개정시 검토보고에서도 서울종합방재센터는 화재, 수재, 지진, 건축물·교량 붕괴, 대형 교통사고 등의 도시재해</p>	의안 번호	912
의안 번호	912		